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0가합4239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민

피 고 1. B

2. C

3. D

4. E

5. F

피고 1, 2, 3, 5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태부

피고 4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낙환

변 론 종 결 2021. 11. 19.

판 결 선 고 2022. 1. 26.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44,00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2020. 1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주문 제1항과 같다.

2. 피고 B과,

가. 피고 C 사이에 2016. 2. 5.부터 2016. 9. 12.까지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금원에 관한,

나. 피고 D 사이에 2016. 3. 11.부터 2016. 7. 20.까지 체결된 별지2 목록 기재 금원에 관한,

다. 피고 E 사이에 2016. 3. 11.부터 2016. 11. 7.까지 체결된 별지3 목록 기재 금원에 관한,

라. 피고 F 사이에 2018. 10. 26. 체결된 별지 4 목록 기재 금원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원고에게, 피고 C은 172,000,000원, 피고 D은 120,000,000원, 피고 E은 142,000,000원, 피고 F은 7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은 여행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며, 피고 D은 피고 B의 처남이고, 피고 E은 피고 B의 이종사촌이며, 피고 F은 피고 B의 부친이다.

나. 피고 B의 항공권블록사업 관련 사기범행

1) 피고 B은 2011. 1.경 원고에게 “내가 여행 알선업을 하는 사람이다. 항공권블록사업이란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블록으로 구간을 정해서 미리 엄가에 대량 구매하여 성수기에 여행사들에게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투자이다. 내가 확보하고 있는 항공권은 타이항공 블록이고, 노선은 괌, 세부, 홍콩, 태국인데 1년 예산이 괌, 세부노선은 각 6억 원, 홍콩 노선은 10억 원, 태국노선은 30억 원 내지 40억 원 정도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항공권 거래가 은밀하고 현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운영하는 G 명의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H의 I 회장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다. 항공권 투자는 장기투자자와 단기투자자로 이루어지는데 장기투자자는 원금을 바로 반환하지 않고 재투자방식으로 진행하며 월 2.5%의 수익금을, 단기투자자는 원금을 몇 달 후 반환하며 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한다. I 회장은 약 500억 원 상당 항공권블록사업을 운영하고 나는 I에게 약 80억 원 정도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원금 손실이 없는 안전한 사업이니 투자를 하라”고 하였다.

2) 그러나 당시 피고 B은 항공권블록사업을 빙자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수익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항공권블록사업을 사실상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아 원고로부터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항공권블록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피고 B은 피고 B의 위와 같은 말을 믿은 원고로부터 2011. 1. 21. 피고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6.까지 127회에 걸쳐 합계 1,447,054,5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 B의 태국 골프텔사업 관련 사기범행

1) 피고 B은 2011. 9.경 원고에게 “내가 태국 J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내에 골프텔을 지어 한국에 있는 고객들에게 회원권을 판매하고 그 회원권 판매대금으로 항공권블록사업에 투자하면 항공권블록사업 수익도 얻고 부동산 가치도 오를 수 있으니 큰돈을 벌 수 있다. 골프텔을 짓기 위해서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인건비, 차량구입비 등으로 약 12억 원 상당이 필요하다. 위 골프텔 지분 15%를 주겠으니

1억 8,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 나는 위 골프텔 말고도 태국에 골프장 부지 크기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 시세가 빠르게 오르고 있으니 안심하고 투자를 해라”고 하였다.

2) 그러나 당시 피고 B은 위 나.항과 같이 항공권블록사업을 빙자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원고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다른 투자자 등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하거나 피고 B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원고에게 위 골프텔사업 지분 15%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피고 B은 피고 B의 위와 같은 말을 믿은 원고로부터 2011. 10. 6. 150,000,000원, 2011. 10. 7. 30,000,000원 합계 1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 B의 형사처벌

1) 원고는 2017. 2. 1.경 피고 B의 위 나.항 및 다.항 기재 사기범행에 대하여 피고 B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 B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 공소가 제기 되었다.

2)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10. 22. 피해자인 원고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등으로 피고 B을 징역 6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18고합41, 111(병합), 115(병합), 2019고합90(병합) 판결].

3) 이에 피고 B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1. 10. 28. 피해자인 원고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피고 B을 징역 10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노2007, 2021노480(병합)1] 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마. 피고 B의 피고 C, D, E, F에 대한 송금

피고 B은 피고 C에게 2016. 2. 5.부터 2016. 9. 12.까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72,000,000원을, 피고 D에게 2016. 3. 11.부터 2016. 7. 20.까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20,000,000원을, 피고 E에게 2016. 3. 11.부터 2016. 11. 7.까지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42,000,000원을, 피고 F에게 2018. 10. 26.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이 7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피고 B의 피고 C, D, E, F에 대한 송금행위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6호증, 을가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B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11. 1. 21.부터 2015. 12. 16.까지 129회에 걸쳐 총 1,619,054,500원(= 항공권블록사업 관련 1,439,054,500원 + 태국 골프텔사업 관련 180,000,000원)을 편취하였고,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약정수익금 또는 투자원금 명목으로 2011. 3. 2.부터 2016. 12. 23.까지 합계 1,175,050,000원(= 원고가 지급받은 1,115,050,000원 + K이 직접 지급받은 6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B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444,004,500원(= 1,619,054,500원 - 1,175,0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 E, F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피고 B은 배우자인 피고 C에게 2016. 2. 5.부터 2016. 9. 12.까지 별지1 목록 기재 돈 합계 172,000,000원, 처남인 피고 D에게 2016. 3. 11.부터 2016. 7. 20.까지 별지2 목록 기재 돈 합계 120,000,000원, 이종사촌인 피고 E에게 2016. 3. 11.부터 2016. 11. 7.까지 별지3 목록 기재 돈 합계 142,000,000원, 부친인 피고 F에게 2018. 10. 26. 별지4 목록 기재 7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 B의 피고 C, D, E, F에 대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위 각 피고에 대하여 돈을 증여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위 각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의 피고 C, D, E, F에 대한 위와 같은 증여 내지 변제는 사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가액반환)으로서 피고 C, D, E, F은 원고에게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항공권블록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항공권블록사업 투자 명목으로 2011. 1. 21.부터 2015. 12. 16.까지 127회에 걸쳐 합계 1,447,054,500원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다른 투자자 등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하거나 피고 B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원고에게 태국 골프텔사업 지분 15%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태국 골프텔사업 투자 명목으로 2011. 10. 6. 150,000,000원, 2011. 10. 7.

30,000,000원 합계 180,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 B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원고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다만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위 항공권블록사업 등의 약정수익금 또는 투자원금 명목으로 2011. 3. 2.부터 2016. 12. 23.까지 합계 1,175,050,000원(= 원고가 지급받은 1,115,050,000원 + 원고 지인 K이 지급받은 6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사기 범행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52,004,500원(= 1,627,054,500원 - 1,175,05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444,004,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편취당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0. 1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B은 원고의 편취액 중 원고의 지인 L 등이 B 등에게 직접 송금한 금액 합계 221,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원고의 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원고의 지인이 직접 피고 B 등에게 차용금을 송금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원고의 지인이 피고 B에게 직접 송금한 돈을 원고의 편취 피해액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2012. 1. 16. 3,500,000원, 2013. 12. 9. 7,000,000원, 2014. 4. 7. 10,000,000원, 2014. 4. 30. 2,000,000원, 2014. 7. 3. 5,000,000원을 각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가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은 2012. 1. 16. 원고에게 3,5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같은 날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3,500,000원을 그대로 반환한 점, 피고 B은 2013. 12. 9. 원고에게 7,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2013. 12. 11. 원고가 M은행 명의로 피고 B에게 위 7,000,000원을 다시 반환한 점, 피고 B이 2014. 4. 7. 원고에게 송금한 11,000,000원 중 10,000,000원은 피고 B이 원고 명의의 자동차를 담보로 N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10,000,000원을 원고 계좌를 거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이 2014. 4. 30. 원고에게 송금한 3,000,000원 중 2,000,000원은 피고 B이 원고 계좌를 거쳐 자신의 채권자인 O(배우자인 P 명의 계좌로 송금), Q에게 각 1,000,000원씩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이 2014. 7. 3. 원고에게 송금한 15,000,000원 중 10,000,000원은 피고 B이 원고 계좌를 거쳐 자신의 채권자인 Q, R에게 각 5,000,000원씩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추가변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 D, E, F(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원고가 2017. 2. 1.경 피고 B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을 무렵 피고 B이 원고의 투자금을 대부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2017. 9. 27.경 원고가 피고 B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였을 무렵에는 2011. 2. 5.부터 2014. 10. 20.까지 피고 B 계좌의 거래내역을 모두 확보하여 피고 B이 배우자인 피고 C이나 처남인 피고 D 등에게 상당한 규모의 돈을 이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채권자인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4호증, 을가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고 있는 법률행위는 2016년도 내지 2018년도에 있었던 피고 B의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인데, 원고가 2017. 9. 27.경 확보한 피고 B 계좌의 거래내역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거래내역에 불과한 점, 당시 원고가 피고 B이 원고의 투자금을 대부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단서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피고 B이 2016년 내지 2018년도에도 위 각 피고에 대하여 사해의 의사로 돈을 증여 내지 변제하였다는 사실까지는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피고 B과 피고 F 사이의 송금행위는 원고가 항고장을 제출한 이후인 2018. 10. 26.경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7년경 이미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존재 및 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피고 B의 채무초과상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원고로부터 항공권블록사업이나 태국 골프텔사업 명목의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각 사업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위법하게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피고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위 불법행위 무렵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앞서 든 증거, 을가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은 항공권블록사업 등을 빙자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나 2016년경에는 투자원금과 수익금의 지급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체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이외에도 기망당한 다수의 투자자가 존재하고 그들의 피해액도 수억 원에서 수십 억 원 이상²⁾인 점, 피고 B은 위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있었던 당시 피고 B은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통하여 피고들에게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다. 피고 B은 피고들 및 피고들의 지인들이 항공권블록사업 등과 관련하여 피고 B에게 투자한 돈의 일부를 변제한 것이고, 이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정상적인 변제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송금 등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특히 금원지급행위는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초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금원지급 사실만을 가지고 지급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을가 제6 내지 8, 1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피고들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피고들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는 전제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편파변제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정작 그 변제행위의 취소는 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편파변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 C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B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지급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피고 C의 지인으로 보이는 AA, AB, AC, AD, AE 등에게 분할하여 송금하였다. 그런데 위 AA, AB, AC, AD, AE은 2011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각자 피고 B의 계좌에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에 달하는 돈을 송금한 자들로서 원고와 마찬가지로 피고 B으로부터 돈을 편취당한 자들로 보이므로, 피고 B은 피고 C을 통하여 위 피해자 내지 투자자들에게 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로서 피고 B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피고 B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계좌에서 생활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내지 투자자들에게 변제하고 남은 돈 역시 피고 C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 D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B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당일 혹은 수일 내로 피고 D의 지인으로 보이는 AF, AG, AH, AI, AJ, AK 등에게 모두 분할하여 송금하였다. 그런데 위 AF, AG, AK 등은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각자 피고 B의 계좌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송금한 자들로서 원고와 마찬가지로 피고 B으로부터 돈을 편취당한 자들로 보이고, AH, AI, AJ도 위 AG을 통하여 피고 B에게 돈을 교부함으로써 이를 편취당한 자들로 보이므로, 피고 B은 피고 D을 통하여 위 피해자 내지 투자자들에게 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③ 피고 E은 2012. 7. 12.부터 2016. 12. 24.까지 피고 B에게 합계 915,009,687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2012. 12. 4.부터 2017. 12. 6.까지 합계 1,155,572,88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송금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기는 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항공권블록사업을 빙자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돌려막기 형식으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해 오고 있었고, 2015. 4.경부터 시작된 유동성 문제를 겪기 전에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 E이 피고 B에게 송금한 돈 중에는 피고 E이 2012. 11. 14.부터 2015. 12. 10.까지 지인인 AL 등으로부터 수령한 합계 407,5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 E은 2012. 12. 31.부터 2019. 8. 11.까지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487,518,750원을 위 AL 등에게 다시 송금하였고, 이와 같이 송금한 돈에서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금 내지 이자로 보이는 점, 피고 E도 피고 B에게 수년간 수억 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B이 유동성 문제를 겪기 전까지는 피고 E에게도 수익금 내지 이자가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E이 피고 B의 처남이라거나 피고 B에게 송금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피고 B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피고 F은 2010. 6.경부터 2015. 9.경까지 자신의 명의 혹은 피고 F의 처인 AM의 명의로 피고 B에게 약 1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송금하였으나, 피고 B으로부터 2016. 2. 19.부터 2016. 8. 27.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27,707,755원을 지급받은 것 이외에 기존에 송금한 돈을 회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기초하면 피고 B이 2018. 10. 26.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F에게 송금한 700,000원은 피고 F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병삼, 판사 김병휘, 판사 조현우

[별지1]

목 록

거래 일시	거래 금액(원)	수취인
2016. 2. 5.	20,000,000	
2016. 2. 17.	10,000,000	
2016. 3. 11.	12,000,000	
2016. 5. 9.	10,000,000	
2016. 5. 10.	20,000,000	
2016. 5. 11.	20,000,000	
2016. 5. 26.	10,000,000	
2016. 5. 27.	10,000,000	
2016. 6. 17.	10,000,000	
2016. 8. 11.	10,000,000	
2016. 8. 12.	10,000,000	
2016. 8. 16.	10,000,000	
2016. 8. 31.	10,000,000	
2016. 9. 12.	10,000,000	
합 계	172,000,000	

[별지2]

목 록

거래 일시	거래 금액(원)	수취인
2016. 3. 11.	20,000,000	
2016. 3. 22.	10,000,000	
2016. 4. 26.	10,000,000	
2016. 5. 9.	10,000,000	
2016. 5. 11.	20,000,000	
2016. 5. 30.	30,000,000	
2016. 7. 15.	10,000,000	
2016. 7. 20.	10,000,000	
합 계	120,000,000	

[별지3]

목 록

거래 일시	거래 금액(원)	수취인
2016. 3. 11.	50,000,000	
2016. 3. 21.	30,000,000	
2016. 5. 11.	30,000,000	
2016. 5. 26.	20,000,000	
2016. 11. 7.	12,000,000	
합 계	142,000,000	

[별지4]

목 록

거래 일시	거래 금액(원)	수취인		
2018. 10. 26.	700,000			

- 1) 피고 B은 항공권불록사업 등 관련 원고 이외의 다른 피해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또다시 기소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B을 징역 7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9고합772, 2020고합530(병합), 2020고합727(병합) 판결], 피고 B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원고가 피해자인 사건과 병합되었다.
- 2)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피해자 S으로부터 2016. 5. 19.부터 2016. 11. 11.까지 합계 564,930,000원, 피해자 T로부터 2016. 8. 25. 120,000,000원, 피해자 U로부터 2016. 8. 22.부터 2017. 5. 8.까지 합계 488,000,000원, V, W과 공모하여 2016. 3. 4.부터 2016. 11. 30.까지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38,600,000원, 피해자 X로부터 2015. 4. 8.부터 2016. 5. 10.까지 합계 617,200,000원, 피해자 Y로부터 2014. 10. 7.부터 2015. 3. 24.까지 176,500,000원, 피해자 Z로부터 2015. 11. 6.부터 2016. 7. 10.까지 1,451,0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